



# 協約書



(公社)日本理学療法士協会と(社)大韓物理治療士協会は、相互の友好関係を確認し相互信頼を基に業務協力を寄与することを確信し、日本・韓国の両協会が共に協力することで合意する。

## 第1条【目的】

本協約の目的は、相互主義に基づく当事者間の業務協力を遂行することにある。

## 第2条【業務協力事項】

本協約に対する業務協力は次の分野を含むものとする。

1. アジアの開発途上国のリハビリ/理学療法の発展のため、日韓両国協会が共に努力する。
2. 両協会員の業務拡大(訪問理学療法制度等)のため、日韓両国協会が共に努力する。
3. 両国理学療法学生招聘研修のため、日韓両国協会は共に努力する。

## 第3条【業務協力推進方法】

1. 当事者間の関心分野を行うため共同合意文を立案及び締結する。
2. 相互協力を緊密に行うための情報交換は、一義的に各協会の担当理事を通して行う。

## 第4条【費用】

本協約によって施行される実務者級相互訪問、業務協力進行費用は日韓両国協会間の協議によって負担する。

## 第5条【効力発生、改正及び終了】

1. 本協約の効力は署名日から効力が発生し、どちらか一方が相手側に3ヶ月前に廃棄決定を書面で通知しない限り継続して有効とする。
2. 本協約の改正は当事者間の書面合意で可能とする。
3. 本協約の効力終了は、本協約により合意され推進中の事業の効力に影響を及ぼさない

## 第6条【連絡及び協調】

1. 関連事案発生時は当事者間で必要な会議を開催できる。

本協約の円滑な推進と遂行のため日韓両国協会は共に協力し、最善を尽くすことを約束し、本業務提携協約書が成立したことを証明するため2部作成し記名捺印後、各々1部ずつ保管する。

2014年 11月 15日

公益社団法人 日本理学療法士協会

社団法人 大韓物理治療士協会

会長 半田 一登

会長 田 範 秀

(署名) Kajita Handa.

(署名) 田 範 秀



# 협약서



(사)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공사)일본물리치료사협회는 상호 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한국·일본 양협회가 공동협력 하는 것에 합의한다.

##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의 목적은 상호주의에 의거 당사자 간의 업무협력을 수행하는데 있다.

## 제 2 조 【업무협력 사항】

본 협약에 대한 업무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1. 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재활/물리치료 발전을 위하여 한일 양국 협회는 공동 노력한다.
2. 양 협회원의 업무확대(방문물리치료제도 등)을 위하여 한일 양국 협회는 공동 노력한다.
3. 한일 양국 물리치료 학생 초청 연수를 위하여 한일 양국 협회는 공동 노력한다.

## 제 3 조 【업무협력 추진방법】

1. 당사자 간 관심분야를 시행하기 위해 공동합의문을 입안 및 체결한다.
2. 상호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정보교환은 일차적으로 각 협회의 담당이사를 통해서 시행한다.

## 제 4 조 【비 용】

본 협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실무자급 상호방문, 업무협력 진행비용은 한일 양국 협회 간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 제 5 조 【효력발생, 개정 및 종료】

1.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타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폐기결정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2. 본 협약의 개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3. 본 협약의 효력종료는 본 협약에 의해 합의되어 추진 중인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 6 조 【연락 및 협조】

1. 관련 사안 발생 시 마다 당사자 간 필요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과 수행을 위해 한일 양국 협회는 공동협력하고, 말은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본 업무제휴협약서가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전범수

(서명)

公益社団法人 日本理学療法士協会

会長 半田一登

(署名)